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817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8174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6 선고 2020가단2296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민호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구

변론종결 2022. 9. 29.

판결선고 2022. 11. 1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6. 선고 2020가단2296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80,110,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110,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C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후에 기타의 사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담보신탁 목적물의 일부가 공매절차에서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이국현, 판사 김광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옹진군 L 임야 1,574㎡
2. M 임야 992㎡
3. N 임야 1,469㎡
4. O 임야 1,381㎡
5. P 임야 1,016㎡

끝.

